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2-38호 | 2022년 11월 9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노웅래 | www.idp.or.kr

국정조사, 정쟁이 아니라 정치적 애도다

- 조속한 국정조사로 10.29참사 진상규명해야
-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 묻는 국민에게 정치가 답할 차례
- 정부여당 국정조사 거부해도 야권의 공동국정조사 추진해 민심의 요구 따라야
 - 국정조사를 통해 존재이유 상실한 정부에 존재이유 찾아 줘야

박 혁 연구위원(정치학박사)

1. 국정조사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

- O 국정조사는 권력분립에 입각해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·통제할 수 있게 한 중요한 헌법적 규정
-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- 헌법은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하게 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국회에 부여
- 철권통치를 목적으로 한 유신헌법은 국회의 국정전반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폐지한 바 있음

O 10·29 참사는 정부부재, 국정실패로 인한 명백한 행정대참사

- 10만 명 넘는 인파 예상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대책 세우지 않은 지자체, 경찰, 행안부, 대통령실
- 참사 당일 사고 전 수차례 위험 신고접수에도 대응하지 않은 경찰과 지자체
- 참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도 작동하지 않아 골든타임 놓친 재난안전시스템
- 총체적 국정난맥이 빚은 참사를 현장 대응 인력의 책임으로만 돌리려는 대통령의 무책임

○ 10·29 행정대참사의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통제해야 할 국회 본연의 의무

- 국민관심이 큰 사회적 대참사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과 선동으로 모는 것이야 말로 파렴치한 선동
-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국정실패 원인 조사, 진상규명, 재발방지책 마련은 국회 의 헌법적 책무

2. 국정조사는 정치적 애도의 시작

-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해 존재이유를 상실한 정부와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애도 반드시 필요
 - 지금은 정치가 대참사로 슬픔과 분노에 빠진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려야 할 정치적 애도의 시간
 -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질책해야 할 시간
 - 그 질책의 시간인 국정조사는 거부하고, 누구도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법회, 예배, 미사 참석으로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끝내려는 것은 정치적 책무 방기
 -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는지 국민과 유가족을 대신 해 국회가 정부에게 묻고 따져, 참사 발생과 대응 과정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희생자, 유가족,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
 - 국회의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대참사를 초래한 정부는 국민께 사과하고, 책임자 문책 등 정부를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고,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안전체계의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함

3. 국정조사 미루는 것은 정부여당의 파렴치

- 수사 후로 국정조사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대참사에 무한책임 져야 할 정부여당의 후안무치
 - 국민의힘은 경찰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엉뚱한 이유를 대며 국정조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음
 - "강제수사가 없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논점만 흐릴 뿐" (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)
 - 국정조사는 위법한 개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별개로 행정대참사를 야기한 정부의 국 정운영과 국정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본연의 목적
 - 대참사의 원인인 국정난맥상, 정부실패 원인, 지자체, 행안부, 대통령실 등 재난안전시스템 의 작동여부와 시시비비를 수사로 가릴 수는 없음
 - 언제 끝날지 모를 수사를 핑계로 국정조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
 - 국정조사는 수사방해가 아니라 수사촉진 할 것. 공론화를 통해 오히려 미진할 수 있는 수사 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하는 시너지효과 유발

○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 등의 여야합의를 통해 우려 불식 가능

- 수사방해나 정쟁 우려는 여야합의를 통해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면 해결될 문제
- 당리당략이 아니라 참사원인에 대한 국민관심과 국가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조사범위 등은 충분히 합의 가능

○ 역대 국정조사도 수사와 별개로 진행

- 역대 사회적 참사 국정조사도 검경 수사 중에 실시
- 삼풍백화점 붕괴 국정조사 : 붕괴발생 1995년 6월 29일 → 7월 5일 국정조사 여야합의 → 7월 7일 국정조사요구서 본회의 제출 → 7월 12일 본회의 의결, 조사착수 → 9월 12일 국정조사보고서 채택
- 세월호 침몰 국정조사 : 세월호 침몰 2014년 4월 16일 → 5월 15일 국정조사 여야합의 → 5월 29일 국정조사요구서 본회의 제출 → 5월 29일 본회의 의결, 조사착수 → 국정조사보고서 채택 무산

4. 정부여당 거부 시 야권 공동국정조사 강력 추진

○ 정부여당이 민심 무시한 채 국정조사 거부할 경우 야권만의 공동국정조사 강력히 추진해야 함

- 여야 합의 추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끝까지 정략적 계산으로 국정조사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야권 공동 추진도 불사해야 함
- 국민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국정조사무용론, 수사 후 실시 등 갖은 핑계로 여론 무시한 채 국정조사요구를 정쟁으로 폄훼하는 상황
- 역대 정부여당은 민심에 떠밀려 국정조사를 합의 추진했으나, 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 정치적 궁지에 몰려 낮은 지지율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민심외면한 채 배짱 대응할 우려
- 정부여당이 대통령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죄가 있냐 없냐만 따지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국 정조사와 같은 정치적 행위를 불신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합의를 어렵게 할 수 있음

O 민심의 국정조사 추진 강력 요구

- 국민 10명 중에 7명 넘는 73.1%가 10.29 참사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응답(뉴스토마토, 11.04)
- 같은 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도 56.8%
- 경찰에만 책임을 돌려 꼬리자르기 하려는 정부의 시도 바로잡으라는 민심

O 국정조사 단독 추진 사례

- 1999년 IMF 경제위기 진상규명을 위해 시행된 국정조사의 경우, 여당에서 야당이 된 한나라당(국민의힘 전신)이 국정조사 요구를 극렬 반대해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만 공동 추진
-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만 공동 국정조사요구서 제출
- 김영삼 정부의 경제 실정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한나라당은 IMF 환란 국정조사 외 국면 전환용 사안을 묶어 별도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해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, 끝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지 않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만 공동으로 추진

5. 10·29 참사 국정조사의 내용

O 조사목적

-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일원에서 156명의 희생자와 다수의 사상자 발생
-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전적 안전조치가 없었고, 인파밀집에 대한 사전 정보보고도 묵살되었으며, 사고 발생 초기와 사후 대응에서 국가재난안전 시스템, 재난컨트롤타워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상황
- 참사의 책임이 특정인과 특정기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, 정부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초래한 결과이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소재 명백히 규명해 국민께 보고
-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을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

O 조사범위

-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·간접적인 원인 및 책임소재
- 대통령실, 행안부, 경찰청, 소방청, 지방자치단체(서울시청, 용산구청) 등의 사전 대응, 초기 신고상황 대응, 보고와 지시의 적절성, 사전 인파통제하지 않은 원인
- 사고 수습과정의 적절성
-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및 제도 개선
- 희생자 및 피해자, 유가족,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 대책
- 기타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

O 조사방법

-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
- 조사와 관련된 기관보고
- 증인, 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
- 전문가들을 통한 예비조사
- 청문회와 기관보고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

○ 조사대상기관

- 대통령실(비서실, 국정상황실, 안보실 등), 국무총리실, 행정안전부, 경찰청(서울청, 용산서, 이태원파출소 등 포함), 소방청, 지방자치단체(서울시, 용산구청), 법무부, 보건복지부 등

○ 조사기간

- 총 60일간 진행하며 본회의 의결 통해 30일간 연장 가능
 - 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